

기안용지

| | | | |
|------------------------------------------------------------------------------------------------------------------------------------------------------------------------------------------------------------------------------------------------------------------------------------|----------------------------------------|-----------------------------------------------------------------------------------------------------------------------------------------------------------------------------------------------------|-----------------|
| 분류기호 문서번호 | 시설 30312- <i>101</i> | 전결 규정 국 장 | 4 조 1 항 전결사항 |
| 처리기간 | 시 장 | | |
| 시행일자 | 85. 9. | | |
| 보존연한 | 영 구 | | |
| 보조 기 관 | 도시계획국장 | 전 결 | 협 법무담당관 심사필 |
| | 시설계획과장 | <i>3/2</i> | |
| | 시설계획1계장 | <i>10</i> | |
| 기안책임자 | 조근호 | 85. | |
| 경유 수신 참조 | 각안참조 <i>10.4</i> <i>도시제 66-2</i> | | 봉 제 |
| 제 목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 결정 | | |
| 제1안 | 내부결재 | | |
| <p>1. 용산천과시장의 이적지 개발에 따른 전자제품단지 조성을 위한 유통업무 설비의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변경 결정코자 우리시 '85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85.3.15)에 상정 심의가결되었기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코자 하며,</p> <p>2. 본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유수지 시설의 변경(폐지)을 재검토 하라는 지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치수과)와 협의한 사항입니다.</p> <p>첨부 : 관계서류 1건.</p> | | | |
| 제2안 | 고시안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심사 1985.10.22 제 366 호 감찰자 법제처장 법무담당관 <i>송</i> <i>2800</i> <i>10/22</i> </div>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 | | |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 결정 고시 | | | 발송 |
| <p>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p> | | | |

1205-25(2-1)A(갑)
1981. 18승인

정직 질서 창조
5394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x/m)
가 33 - 41 1985. 2. 6.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9.

서울특별시

○ 시설변경 조서

| 구분 | 시설명 | 위 치 | 규모(M ²) | 비 고 |
|----|-----|--------------|---------------------|---------|
| 기정 | 유수지 | 용산구 한강로 2가 2 | 6,709 | 제 6 유수지 |
| 변경 | " | " | 0 | 폐 지 |
| 기정 | " | 용산구 한강로 3가 1 | 2,490 | 제 5 유수지 |
| 변경 | " | " | 0 | 폐 지 |

○ 변경결정도면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제3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시설계획과장

제목 : 같음

1985.10.0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인 용산 유통업무시설 결정시 귀부 도설30212-14581 (85.7.26)호로 검토 지시된 사항중 제5,6 유수지 폐지 재검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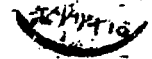
2. 우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기존 27개 유수지에 포함되어 기 용량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용산 제5,6 유수지를 매립하여도 무방하다는 기술적 타당성이 나왔 으며, 용산유수지 배수펌프장의 몽리지역이 전자상가등 사람들이 밀집되는점등을 감안 하수도 시설기준(유수지)보다 충분한 여유를 갖기 위하여 제4 유수지에 펌프 400HPx2대를 설치 하는 조건으로 제5,6 유수지를 매립 토지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폐지토지

3.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구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 | |
|---------------------------------------------------------------------------|------------|
| 제4안 | |
| 수신 : 총무처장관(시:공보관) | 발신 : 시(국)장 |
| 제목 : 관(시)보 게재의뢰 | |
| 1. 다음과 같이 관(시)보 게재의뢰 합니다. | |
| 가. 게재구분 : 고시 | |
|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변경 결정 | |
|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 |
| 라. 게재내용 : 별첨 | |
| 첨부 : 고시문 2(1)부. | |
| | |
| 제5안 | |
| 수신 : 용산구청장(도시정비과장) | 도시계획국장 |
| 제목 : 같음 | |
|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 관계과에 통보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할것. | |
|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 |
| | |
| 제6안 | |
| 수신 : 수신처참조 | 발신 : 과장 |
| 제목 : 같음 | |
|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하였기 통보하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 |
|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치수과장, 농축과장, 상공과장. 끝. | |
| | |

도 시 계 획 위 원 회 회 의 록
=====
('85 제1차위원회 소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 1. 일 시 : '85. 3. 15 15:00-17:00
- 2. 장 소 : 도시계획국장실
- 3. 안 건 : 도시계획용도지역(주거→상업)변경 유동업무실비결정 등
- 4. 참석위원

| | |
|-----|-----------------|
| 위 원 | 김 원 원 |
| ▪ | 오 위 영 |
| ▪ | 이 동 백 |
| ▪ | 김 인 식 |
| ▪ | 장 영 섭 |
| ▪ | 홍 |
| 서 기 | 도시행정계장 (종합계획계장) |

5. 불참위원

위 원 백 상 승

6. 기탁참석 : 산업경제국장, 보건사회국장, 시설계획과장, 주택개발과장,
 시설계획1계장, 가로계획1계장, 은평구도시정비과장

제24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도로

유수지) 결정 및 변경 결정

- 용산시장 용도지역 (주거→상업) 변경 가 결
- 시장폐지 (3개소) 가 결
- 유수지 폐지 (2개소) 가 결
- 도로폐지 (1개로선) 가 결
- 유통업무설비결정 가 결

제28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정사) 결정

- 등촌동사부소 용지결정 가 결

제29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정사) 변경 결정

- 면목동 공용의정사 폐지 가 결

제37안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 및 변경 결정

- 중계동 학교변경 가 결
- 중계동 269-1 도로폐지 가 결
- " 267일대 도로신설 부 결

제33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진관내외동 소로망 결정 (127개로선) 가 결

제35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신당동 소로 신설 가 결

제36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 상도동 도로 변경 결정

- 제38안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신월동 소로신설 가결
- 제47안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 중화동 도로 변경 가결
- 제39안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 방화동 543-1일대 신설 가결
 ◦ 방화동 272-4일대 신설 가결
- 제41안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
 ◦ 월계동 정류장 폐지 본회의재심의
 ◦ 상계동 정류장 신설
- 제45안 도시계획사업(주택개량재개발사업) 구역내 공원용지 일부 해제
 ◦ 미아 1,5구역내 공원 품치지구 해제 가결
 ◦ 금호, 하왕1,2구역내 공원 품치지구해제 "
 ◦ 봉천2구역내 공원해제 "
 ◦ 봉천3구역 "
 ◦ 봉천4구역 "
 ◦ 창신1구역내 "

서 지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85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속개 본 회의에서 심의의임된 15개안 30건의 사안을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건별로 주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안) 도시계획동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도로, 유수지) 결정 및 변경 결정

- 용산시장 용도지역 변경 (주거지역-상업지역)
- 시장폐지(3개소)
- 유수지폐지 (2개소)
- 도로폐지 (1개토선)
- 유통업무설비 결정

시설계획과장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계획의 배경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년도 부터 IBRD차관등으로 가락동에 농수산물 종합 도매시장을 건설 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곳으로 용산 시장이 이전되게 됨에 따라 그후적지의 토지이용계획으로 도심의 전자부품상을 배치하고자 개발 계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 및 수차의 관계 국장회의를 통해 개발 방향을 정했습니다. 본계획은 전자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지의 토지는 사유지도 있으나 유수지등의 사유지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러한 토지를 유통업무 설비로 결정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지내의 공공 시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전자 제품 상이 입주해서 단지 조성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기본계획 실행(도면에 의함) 추진기간은 금년도 부터 시작해서 '88년도 이전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600억원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100억은 공공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자에 의한 계획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사항은 계획 지내 일부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유통 업무설비 결정 및 유수지중 일부 용도폐지와 일부는 특개 또는 보강해서 단지내 유수처리에 이상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계획은 용산지하차도 확장, 용산서부 역사개설(지하철 1호선연결계획) 원효대교 복단 입체화(한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 추진) 유수지정비 - 주차장 계획등으로 계획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임기획단

이종재

김원위원

시설계획과장

계획지내 상업지역이 아닌곳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기존 건축물이 시장으로 된것은 폐지하여 유통업무 설비로 결정 토록 계획 하였습니다.
 폐지대상과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하시오
 상업지역과 유통업무 설비는 신규 지정하는것이고 도로, 유수지 시장은 폐지하는 것입니다.

정영섭위원 유수지 일부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는?
산업경제국장 상하수국에서 작년 홍수때를 기준해서 충분히 검토, 판단한
것입니다.

이동배위원 그 문제는 이미 주관 관련부서에서 판단이 된것이므로 재론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유수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상임기획단 불량주택정비 및 아파트건립이 어렵게 되어 곤란합니다.
이중재

김인식위원 상하수국의 판단 사항은?
시설계획1국장 본계획의 용역시행시 상하수국이 참여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김원위원 유수지는 도시계획 시설인데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
다면 복개지의 기상권을 민간에 불하 할 수 있습니까?

김인식위원 공공시설이므로 불하가 불가합니다. 공공주차장이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수지의 복개는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복개에 관한 방침

은 70년대 민자사업으로 복개해서 상가를 짓도록 한 바
있는데 이것에 말썽이 생겨서 총리실 훈령으로 복개지위에는
구조물의 설치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복개 하더
라도 오픈 스페이스로 쓰는것은 가능합니다.

이동배위원 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의 타당성은 이미 검토되었고 세부
계획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이루어 질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일단 마련이되어 성안 결정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가 단지의 중간을 지나가도록 하고
있는것은 기존건물을 살리고자 한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대두되나 현실점에서 계획의 수정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본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때는 이러한
의사라도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교통동선 계획 설명 (도면에 의함)

이미 교통량 조사까지 완료되었고 검토결과 큰가중 요인은 없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영섭위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대단위 상가의이전계획을 추진 한 바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기본적인 상가의 이전계획의 추진부터 선행한 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기본적으로 전자 제품상 단지들 만들고 집단화 하게하여 이루시키는 것에 대해 당해 사업자들은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임대로 하여 임대료의 적정 수준 책정으로 투기요인 제거와 적정 수준의 임대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 했으나 사업자들은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의 집단 단지화는 외국관광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알선 업체에 종사되는 차량은 약 700여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피크시즌 피크타임을 기준으로 판단한결과 본단지계획에서 충분히 소화 능력이 있을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등위원

전자상가 단지라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왔다가 또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들은 대중 교통소단으로 연결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원만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계획국장

본단지는 지하철 4호선과 연결되고 기존지하철 1호선과 연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상업지역 중심에 기존의 버스정류장 4개소외에도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원위원 : 관광버스는 어디에서 진입하여 또 어디로 나갈까?

산업경제국장 : 작고의 박차 기능은 별도로 유지하면서 일정 행선지를 향해 나갈때만 진출입되도록 되어있고 또 총차량이 약 700대 정도 일것으로 보기때문에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과장 : 용산역 지하차도를 통해 진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 앞으로 모든 도시정비사업추진시에는 반드시 후적지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원위원 : 본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의 선례를 보아 본계획의 집행 과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용도지역변경 시장 우수지 및 도로의 폐지와 유통업무설비를 결정하는안을 가결 했으면 합니다.

김인식위원 : 추가로 언급하면 원효대교 램프를 강변로쪽으로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불가한것으로 보고 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용산역 지하차도 문제는 철도청과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것 또한 우려됩니다. 그리고 1호선용산역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원 위원 :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보다 신중히 재 검토하도록 하고 의결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일 동 : 동의(가결)

(제28안)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

○ 등촌동 사무소 용지결정

시설계획과장 :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일 동 : 동의(가결)

| | |
|-------|-------------------------|
| 의안번호 | 제 26호 |
| 의결년월일 | 1985. 3. 21. (제 / 회) |

의결사항

용도 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도로, 우수지)결정 및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의 안건

| | |
|-------|--------------|
| 제출자 | 서울특별시청 |
| 제출년월일 | 1985. 3. 21. |

2407/25 -

1. 의결주문

· 당시 용도지역 변경및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유수지, 도로) 결정및 변경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조서 : 별첨

2. 제안이유(입안취지)

- 용산청과물 시장이 가락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적지 개발
- 전자제품 단지조성으로 도심성장공간의 재배치
- 도심교통 집중의 완화

3. 기타 사항

- 도로(80.6.7:결정) 폐지:건설부승인사항

·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사항

가. 공고및 공람

· 도시계획안 :용도지역 변경및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유수지, 도로)결정및 변경결정

· 일자및계재신문:85. 1. 31 (경향신문)

· 의견청취기간 : 85. 1. 31-85. 2. 14

· 공람장소 : 산업경제국 농축과

나. 의견접수및 처리상황 (없음)

5.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심사(검토)의견

- 원효대로에 연접한 기존 건축물의 발생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계획을 후퇴 신속하는 전면적인 지역구조 개선사업의 수행이 요망됨
- 당해 판매단지의 입지로 인한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고려 주변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가로망등의 조정이 필요함
- 기존 제5.6 유수지의 외곽도로 신설 필요
- 기존 제5.6 유수지의 기존주택지를 사업지구(유통업무설비)에 포함 시키는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함

0 용도지역 변경 조서

| | | | |
|-----------|-----------------|---------|----|
| 구분 | 위치 | 규모(㎡) | 비고 |
| 주거지역-상업지역 | 용산구 한강로2가15-2일대 | 121,667 | |

0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변경 조서

| 구분 | 시설명 | 위치 | 규모(㎡) | 비고 |
|----|--------|---------------------------|-----------|------------------------------------------------------------------------------------------------------|
| 신설 | 유통업무설비 | 용산3 한강로2가 15-2일대 | 166,363 | 도매시장:40,111㎡ 화물적하장:1,000㎡ 업무필부대시설:10,200㎡ 주차장, 녹지및보도 :88,862㎡ 도로 :26,190㎡ (기존계획도로) |
| 변경 | 시장 | 용산구한강로2가16-1 일대 | 17,050-0 | 폐지 |
| " | " | " 한강로3가 원효로3가 신계동 일부지역 | 45,713-0 | " |
| " | " | " 한강로3가 15- 3 | 22,555-0 | " |
| " | 유수지 | " 한강로3가 1 | 2,490-0 | " |
| " | " | " 한강로2가 2 | 6,709-0 | " |
| " | 도로 | " 한강로3가 5- 3 | B=15m | " |
| " | " | " " 16-27 | L=506m -0 | " |

129 2410

| 도시계획위원회 | |
|---------|----|
| 접수 | 경유 |
| | |

| | | | 시 | 장 |
|----|----|-----|---|---|
| 과장 | 국장 | 부시장 | | |
| | 전결 | | | |
| | | | | |

서운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상정안

1. 안건명 :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우수지, 도로) 결정및 변경결정
2. 내용 (위치, 규모, 내용, 기타)

별첨

3. 현재의 도시계획 상황

· 상업지역 주거지역

· 2,4층 미관지구

4. 상정사유

· 용산청과시장의 이격지 개발

· 전자제품 단지 조성으로 도심성장 공간의 확보

· 도심교통 집중의 완화

5. 도시계획 변경 용계규정중 관련법규 검토사항

· 도로(80.6.7 결정) 폐지: 건설부 승인사항

6. 기타 (도시재개발법 제 68 조에 의한 참석자 인적사항등)

첨부 : 1. 위치도 (1/5,000 - 1/25,000)

2. 상세도 (1/1,200 - 1/ 3,000)

3. 관련서류 (법규 또는 방침서)

4. 심의안

0 용도지역 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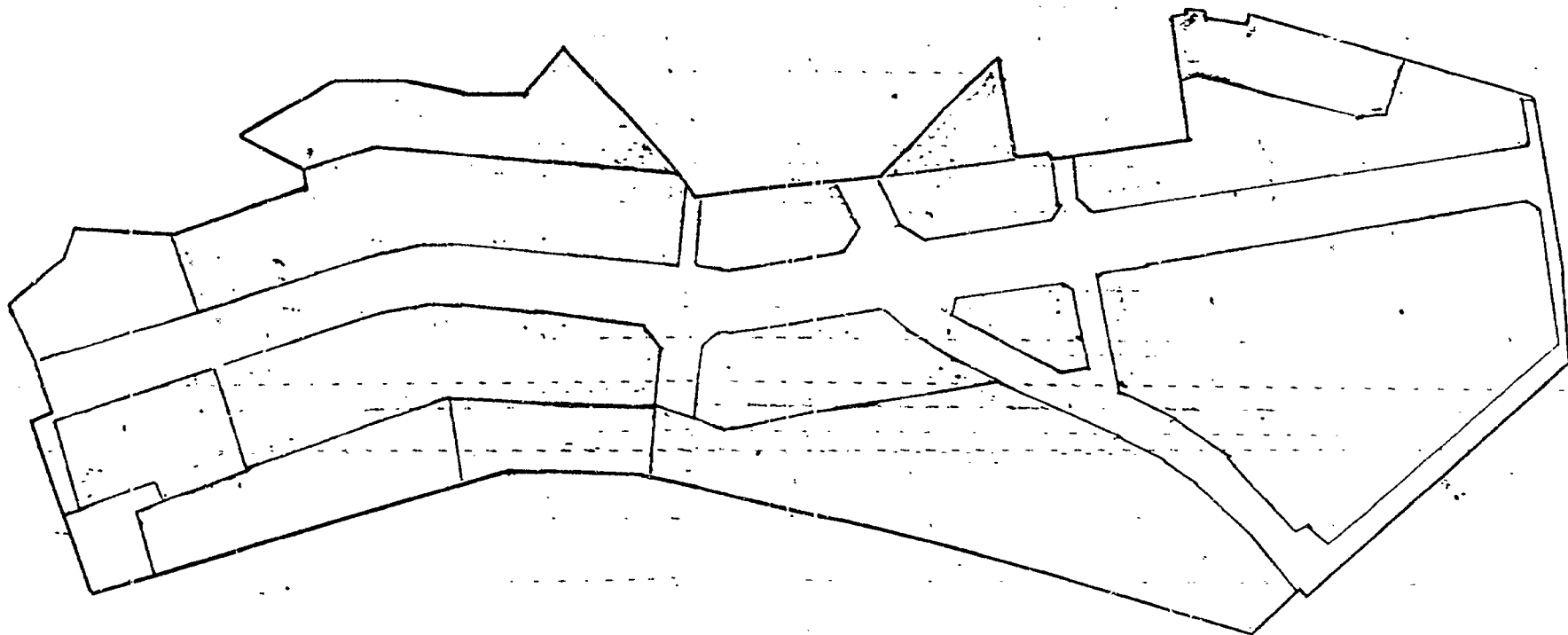
| 구 분 | 위 치 | 규 모 (㎡) | 비 고 |
|-----------|-----------------|---------|-----|
| 주거지역→상업지역 | 용산구 한강로2가15-2일대 | 121,66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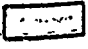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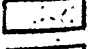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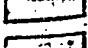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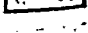
0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변경 조서

|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규 모 (㎡) | 비 고 |
|-----|--------|---------------------------|-----------------|----------------------------------------------------------------------------------------------------------|
| 신설 | 유통업무시설 | 용산구 한강로2가 15-2일대 | 166,363 | ·도매시장:40,111㎡ ·화물적하장:1,000㎡ ·업무및주거시설:10,200㎡ ·주차장, 녹지및보도 :88,862㎡ ·도로:26,190㎡ (기존계획도로) |
| 변경 | 시 장 | 용산구한강로2가16-1 일대 | 17,050㎡ | 폐지 |
| " | " | " 한강로3가 원효로3가 신계동 일부지역 | 5,713㎡ | " |
| " | " | " 한강로3가 15- 3 | 22,555㎡ | " |
| " | 유수지 | " 한강로3가 1 | 2,490㎡ | " |
| " | " | " 한강로2가 2 | 6,709㎡ | " |
| " | 도 로 | " 한강로3가 5- 3 " " 16-27 | B=15m L=506m | " |

유동업무설비결정

1:5000



-  : 도매시장
-  : 서비스시설
-  : 화물적하장
-  : 일부유통판매시설
-  : 주차장및녹지



용도지역변경 (주거→상업)

